
2017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운영 방향 및 사례



2018. 1.

서울대학교
[상근감사실]

2017년도 상반기 자체감사 운영 방향

□ 감사 운영 방향

- 지역적으로 떨어져 있는 기관 종합감사 실시
- 반복적이고 유사한 문제점에 대한 시정 처리 및 본부 부서에 개선방안 마련 촉구
- 감사 처분 수위 결정 및 정당성 제고를 위한 감사 처분 자문 회의 개최

□ 감사 실시 기관 및 조치사항

○ 실시 기관

- 종합감사 및 특정감사 : 기초교육원 등 6개 기관 (2017. 4. 5. ~ 2017. 9. 8.)

○ 감사결과 조치사항

- 징계 : 1건 1명
- 시정 : 재정 6건(60,571천 원), 행정 1건
- 경고·주의(기관) : 16건 6개 기관
- 통보 : 8건

□ 감사 결과 주요 성과

○ 부적정한 회계 관행 근절 및 회계 투명성 제고

- 기관에서 자체적으로 지급한 임의 수당 금지
- 퇴직급여충당부채의 적립 체계를 정비하여 건전한 운용 방안 마련
- 법인카드 부적정 사용 금지
- 용역·공사대금 지급 시 정산 및 검수 철저를 통한 예산 손실 방지

- 여비 중복 지급 적발을 통한 부정행위 정비
- 법인재산 무료 사용 제한 및 미납 수입금에 대한 독촉 등 수입금 관리 철저
- 관행적 수의계약 금지 및 사업 전 타당성 조사 철저

○ 규정 준수를 통한 본부 유관부서와의 보고 및 검토 체제 구축

- 학내 기관 간 협약 체결 시 본부 유관부서 및 위원회의 검토 및 심의 촉구
- 본부 검토 대상 공사(시설공사 1억원 이상 등)의 규정 준수 촉구
- 기관 자체 장학금 지급 시 본부에 보고 촉구

○ 교직원 복무 관리 철저

- 규정에 근거하지 않은 자체 보직 신설 금지 촉구
- 공무국외여행 시 허가권자의 허가 촉구 및 여행계획서와 다른 여행 금지
- 교원 사외이사 겸직 기준 및 허가 후 의무 준수 촉구

○ 기관 운영의 적정성 제고 및 규정 정비

- 기관 내 자체 심의·자문위원회의 실질적 운영 개선 요구
- 규정에 없는 기관 신설 금지 요구
- 미술품을 포함한 물품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제정 및 관리 체계 개선요구

□ 감사 전문성 제고 및 처분 결과의 공정성 확보

○ 감사인 감사역량 강화

- 감사교육원(사이버 강좌 및 감사기본과정), 법제처 법제기본과정 등 감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이수

○ 감사 자문회의를 통한 감사 처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강화

- 중요 사안은 (비)상임감사 및 감사 전문가를 포함하는 자문회의를 통하여 감사 처분의 공정성 및 적정성 확보

2017년 상반기 자체감사 주요 감사사례

□ 기관 운영 부적정

연구운영위원회는 대학·연구소 간 연구관련 협력 및 조정에 관한 사항, 연구인력, 연구시설·물품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게 되어있으며, 연구원 내부 조직을 신설하는 경우 ‘연구소설치검토위원회’의 평가와 ‘연구소위원회’의 심의를 거친다.

【서울대학교 학칙 및 연구소(원) 설치, 평가 및 폐지에 관한 지침】

- 연구소(원)와 학내 기관 간 협약을 본부 유관 부서(위원회)의 심의 등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체결
- 자체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심의 없이 집행하며, 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
- 설치 근거 없는 기관을 임의로 신설하고 학교 예산으로 운영

□ 수입금 관리 부적정

수입은 법령과 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수납하여야하며, 각 기관에서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소관에 속하는 수입을 전부 법인회계에 납부하여야 하며 세출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직접 사용할 수 없음

【서울대학교 법인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】

- 수입금 발생 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수입금 징수 및 사용
- 무료 사용 대상이 아닌 자에게 학교의 시설물을 무상 제공
- 수입금 독촉 및 징수 처리 지연에 따른 미납 수입금 증대

□ 수당 및 여비 지급 부적정

법인 교직원의 인건비 및 수당은 반드시 규정에 근거를 두어 지급하여야하고 예산에 반영하지 않는 수당, 활동비 등 보수성 성격의 경비는 지출할 수 없음. 연구수당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이 연구과제 수행에 기여한 정도를 평가하여 이를 근거로 지급하며, 1인에게 전액 지급할 수 없음

【서울대학교 재무회계 규정, 서울대학교 교내연구비 관리지침 등】

여행자는 출발 전에 사전승인을 받아 여비를 신청하여야 하며 외부에서 숙박비나 식비 등 체재비를 지원하는 경우에는 해당 체재비를 공제하고 신청하여야 한다.

【서울대학교 여비 규정】

- 교직원 본연의 업무에 대하여 기관에서 근거 규정 없이 수당을 결정하여 교직원에게 지급
- 연구수당을 기여도 평가 없이 매월 급여 형태로 지급하고 연구책임자 1인에게 연구수당을 전액 지급
- 서로 다른 회계 또는 동일 회계 내 다른 과목에서 단일 출장에 대하여 여비를 중복 지급

□ 계약 및 회계처리 부적정

시설비 등 시설사업과 관련된 예산을 기관 자체에서 집행 시 건물구조 및 전기·소방시설 변경 및 총 시설사업비가 1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시설관리국의 기술 검토를 득해야 함

【법인회계 세출예산집행지침】

공사대금 지급 시 발주처는, 산재·고용보험료를 계상한 경우에 그 가입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며, 공사폐기물에 대해서는 친환경적으로 적절하게 처리한 증빙서류를 확인한 후 공사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.

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,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등】

- 시설관리국의 기술검토 대상 사업을 검토 받지 않고 집행
- 시설공사 대금 지급 시 산재·고용보험 완납증명서 및 공사폐기물 처리 확인증 등 미검토
- 용역 계약 시 주관적 평가에 근거한 관행적 계약 연장 및 사업 타당성 검토 부실